

[별지 서식]
공동구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제3조 관련)

공 동 구 명			
위 치			
기 간			
목 적			
개 요			
점 용(사용) 기 관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점용(사용) 위치도
2. 평면도
3. 단면도
4. 점용(체적)산출내역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중 “시설물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 또는 위탁받은자”를 “시설물관리자 또는 위탁받은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하고, “관리자 및 위탁받은자”를 “관리자”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안 제35조(제3항)·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중 “총괄관리자”를 각각 “시장”으로 한다.

안 제12조중 “도로및도로시설물의 관리자는”을 “관리자는 도로및도로시설물에 대하여”로 한다.

안 제31조제2항중 “교통관리실장”을 “총괄관리자”로 한다.

안 제35조제2항 제2호중 “관리부서”를 “관리부

서의 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호의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p>2. 공동구 3. 교통안전·관리시설물 4. 하천복개구조물 5. 하천 및 하천시설물 6. 하수도시설물 7. 기타 도로부속물</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도로시설물"이라 함은 차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보도·한강상교량·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p> <p>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p> <p>3.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설비,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4. "도로표지"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표지규칙(건설교통부령) 제2조에 규정된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기타표지를 말한다.</p> <p>5. "도로표지시스템"이라 함은 도로표지의 위치·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p> <p>6. "무인단속시스템"이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7. "지능형교통체계"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p> <p>8. "도로전광표지"라 함은 도로상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숫자 및 도형을</p>	<p>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p> <p>9. "하천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육천, 청계천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p> <p>10. "하천시설물"이라 함은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계방·호안·보·수계·수문·관측시설·육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저포함) 등의 시설물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p> <p>11. "하수도시설물"이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12.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p> <p>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시장은 교통관리실장과 건설국장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주요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p> <p>1. 교통관리실장 : 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 도로표지, 교통안전·관리시설물(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 등</p> <p>2. 건설국장 :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수도시설물, 하천 및 하천시설물,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등</p> <p>②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 및 부속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p> <p>②관리자는 시설물 및 부속물의 구조 또는 용도 등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p>
--	---

<p>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p> <p>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 시설물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서 제외된 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p> <p>②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④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8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①관리자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②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5년에 1회 이상 실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시 <p>②제1항의 정밀안전진단 기관 및 대가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p> <p>제2장 도로 및 도로시설물</p> <p>제11조(도로공사의 시행) ①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p>
--	--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육안 및 휴대 장비 등에 의한 점검)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육안, 점검기 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
3.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 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 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시설물 상태의 구분)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급 : 안전 및 기능유지가 정상적인 최상의 상태
2. B급 : 경미한 손상은 있으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
3.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4. D급 : 주요부재가 노후화(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되어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
5. E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의 사용을 즉시 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관리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 및 도로시

설물별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①관리자는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도로 및 터널 등의 조명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광원의 교환·배선·기기보수 및 사고가로등주 복구 등의 정비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관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구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이 장에서는 "점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각 공동구 점용시설물별 점용자(이하 이 장에서는 "점용자"라 한다)가 책임·관리한다.

②관리자는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③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등의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시행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공동구 본체의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 ①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안전관리본

<p>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구 관련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2. 소방방재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 임·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공동구의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타 시설물 점용(사용)여부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공사시기, 공사내용, 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p>④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구 유지관리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직원 포함) 2. 관할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3.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 직원 <p>⑤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구별 개선사업 시행계획(공사시기, 공사내용, 공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 2. 기타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등 <p>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⑦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관리자는 시설계도면, 준공도면 기타 관련도면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②도면은 공동구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및 교점부 상세도면, 기타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p>③도면에는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④관리자는 제2항의 도면외에 공동구의 주요 지점에 대하여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⑤관리자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총괄관리자·소방방재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도면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본체·부대시설 및 점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점검 : 내·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2.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3.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육안,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점용자 또는 전문용역회사에 용역 시행) 4.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p>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p> <p>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p> <p>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p> <p>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p> <p>②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하는 때에는 누전·화재·누수 및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1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소관 점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p>
--	---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점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공사의 승인)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 등의 공사 또는 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점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인하여 공동구의 본체·부대시설 또는 다른 점용시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공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점용시설의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3조(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시설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점용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화재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점용시설 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긴급조치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또는 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점용자가 책임을 진다.</p> <p>제26조(보안에 관한 사항) 점용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따른 보안 및 방재에 관하여 관리자가 정한 공동구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4장 교통안전·관리시설물</p> <p>제27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교통안전·관리</p>	<p>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이 장에서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도로표지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표지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표지의 세척·도색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로표지 장애시설 정비(신호등·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p>제28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도로표지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p> <p>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관리자는 도로표지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검반 구성 : 점검반은 도로표지 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건설교통부령) 제2조 내지 제13조의 사항을 점검한다. <p>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관리
--	--

<p>2. 통신선로 관리</p> <p>3. 기타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p> <p>제31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지능형 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교통관리센터(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남산권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가공 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p> <p>2. 전기·통신망 등 관련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p> <p>3. 기타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p> <p>②제1항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도로순찰업무, 긴급구조업무, 교통방송·홍보업무, 공사장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p> <p>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설치도로에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34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점용 허가권자(신고에 대한 수리권자를 포함한다)는 허가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하천복개구조물</p> <p>제35조(점용자 지정 등) ①하천복개구조물(이하 "복개구조물"이라 한다)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장에서 "점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p> <p>②각 시설물의 점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주차장, 적환</p>	<p>장 포함)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및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단, 도로 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견인소·주차장·철도·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p> <p>2.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은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은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p> <p>3.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p> <p>③시장은 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점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제36조(안전점검 등) ①점용자는 복개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복개구조물의 본체를 특별법의 2종 시설물에 준하여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점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 본체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점용자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복개구조물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점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물의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 실시·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점용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점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38조(하천복개공사 시행)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	--

제39조(서류비치) ①점용자는 순찰·안전점검·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순찰일지, 안전점검일지
2. 작업일지
3. 시설물관리카드
4. 기타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점용자는 제1항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하천 및 하천시설물

제40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 및 하천시설물(이하 이 장에서 "하천시설물"이라 한다)의 점검·정비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1종 및 2종 시설물은 특별법·령에 의한 점검·진단에 관한 사항

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자는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육안,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
3.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관리자는 수문, 육감문,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일일 또는 필요시 수시
2. 정기점검 : 관리자가 정하는 점검표에 의한 주간·월간·분기 및 연간 점검
3. 긴급점검 : 시설물의 긴급상황 발생시

제42조(보수조치) ①관리자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

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보수 및 보강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서류비치) ①관리자는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일지
2. 작업일지
3.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
4. 특별법에 의한 점검·진단 자료
5. 기타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관리자는 제43조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하수도시설물

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자는 하수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3.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하수종말처리 시설에 한함)
4.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복개구조물 및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를 위한 하수가스의 채취장소는 관리자와 시험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

<p>하여야 한다. 제46조(기타 도로부속물 관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도로부속물은 별표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이를 책임 관리한다. 제8장 보 칙</p>	<p>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구 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관 리 자
도 로 시 설 물	서울특별시도	○차도부분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청소 및 보도부분(측구 포함)	자 치 구 청 장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차도·보도 포함) -지하보도·보도육교 제외 ○청소 및 녹지·가로수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교 량	○한강상 교량 및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 교량	건설안전관리본부장
	터 닐	○서울특별시도상의 터널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고 가 차 도	○서울특별시도상의 고가차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입 체 교 차	○입체교차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 하 차 도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차도 및 지하보차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도 로 부 속 시 설	공 동 구	○공동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자 치 구 청 장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한강상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상의 가로등 ○터널·지하차도상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도상의 가로등(보도육교 포함) ○지하보도상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	자 치 구 청 장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정보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설비와 긴급연락시설의 설치·관리	교 통 관 리 실 장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버스전용차로 유·무인 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교 통 관 리 실 장
	도 로 표 지	○문안검토	교 통 관 리 실 장
○자동차전용도로·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자 치 구 청 장	

구 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관 리 자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시신유도표지·시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 등)	○ 사업주관	교통관리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의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차량진입금지시설·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법면·도로용벽·방음벽·맨홀 등)	○ 자동차전용도로·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의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하천	○ 국가, 지방1·2급 하천 (단, 한강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유지관리)	자치구청장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자치구청장
	○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빛물펌프장 (유수지 포함)	○ 호안블록, 용벽, 도수로, 우수토설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등	자치구청장
수문	○ 구조물, 문짝, 권양기 시설물 등	자치구청장
	○ 한강의 육갑문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한강관리사업소장
		○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 기타하천 육갑문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하수처리종말시설	○ 하수처리종말시설 및 부대시설	하수처리사업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하수처리사업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하천복개구조물	○ 하천복개구조물 (단, 청계천의 광고~신설동 구간과 육천의 서소문로 경계~한강합류지점 구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유지관리)	주기능별 점용기관(부서)의장

- 비 고 : 자치구청장 유지관리하는 시설

-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설
- ② 자치구도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
- ③ 자치구관리의 하천 및 하천시설
- ④ 사무위임조례,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채비지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8
----------	-----

2001년 9월 일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01. 8. 20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01. 8. 22
- 라.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도시
관리위원회(2001.9.7)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도시계획국장 : 진철훈)

- 가. 제안이유
 -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채비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채비지의 관리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채비지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나. 매각대금은 일시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 1) 채비지의 매각 사유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 분할납부 기간과 이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함.
 - 2)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10년 이내, 연 5%의 이자
 - 3)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추천한 사립학교 법인이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10년 이내, 연 5%의 이자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지역의 상인들이 설립한 조합에 시장용지를 매각하는 때 : 5년 이내, 연 8%의 이자

- 5)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채비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허가건축물 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한 채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5년 이내, 연 8%의 이자
- 다. 지장권이 점유하고 있는 채비지는 매각대금의 5% 이내에서 할인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지장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매각이 촉진되도록 함(안 제9조)
- 라. 채비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채비지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1)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채비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비지
 - 3) 농·축·수산업협동조합이 농·축·수산물직판장을 직접 설치·운영하고자 요청하는 채비지
 -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의 전시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요청하는 채비지
 - 5)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출자·출연한 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비지
- 마. 채비지의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바. 채비지를 신탁에 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채비지의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4조)
- 사. 채비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채비지소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채비지의 대부료·변상금 또는 매각대금의 30%를 당해 자치구에 귀속시키도록 함(안 제25조)
- 아. 채비지의 매각,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징수절차 등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제26조)

4. 참고법령